| 중소벤처기업부 | **보 도 자 료**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| 보도 일시 | (지 면) 3.2.(목) 조간<br>(인터넷) 3.1.(수) 12:00 | - |
|---|---|---|

| 담당 부서 |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<br>소상공인재도약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장훈 (044-204-785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남경탁 (044-204-7839) |
| | | | 주무관 | 유환규 (044-204-7860) |

# 자영업자 고용보험,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

□ **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**(1인 소상공인 → 전체 소상공인) 및 전년 대비 **지원예산 약 38% 증액**('23년 50억원)

□ **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**하여 **사례 중심 홍보 강화** 예정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%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,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,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(20~50%)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.

특히, 작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('22.11.24.시행)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,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·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,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, 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.

< 대표 사례 >

☞ 부산 해운대구 성OO 씨

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었으며, 작년 9월부터 약 430만원의 실업급여 및 300만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고 현재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음

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,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:1 안내하고,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.

특히,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·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(http://www.semas.or.kr)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(http://go.sbiz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전화상담실(콜센터)(1357)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.

이영 장관은 “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을 개정하여,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”며,

“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,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참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□ **(사업목적)**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**고용보험 가입을 유도**하고, **소상공인**의 **사회안전망 제도권**으로 **편입 촉진**

□ **(지원규모)** ('22) 36.3억원 → ('23) 50억원 (전년대비 38% 증가)

□ **(지원대상)**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**모든 소상공인**

* '23년 약 25,000명 지원 예정

□ **(지원기간) 최대 5년**

* ('18) 최대 2년 → ('19) 최대 3년 → ('21) 최대 5년

□ **(지원방식)** 납입 보험료의 **20~50%**를 **월별 환급 지원**

(단위 : 원, %)

| 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보수액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| 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| 지원 비율 | 50% | | 30% | | 20% | | |
| 월 지원액 | 20,475 | 23,400 | 15,750 | 17,550 | 12,870 | 14,040 | 15,210 |

□ **(지원실적)** '18년 2.5천명 지원에서 **'22년 18천명**으로 약 **7.2배 증가**

**참고 2** **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문**

#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
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합니다



## 지원대상

**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**

*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
* 상시근로자수(5명 미만,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, 매출액(표)

| 평균매출액 | 120억원 이하 | 80억원 이하 | 50억원 이하 | 30억원 이하 | 10억원 이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업종 | 제조업 (식료품, 의복, 의료), 전기, 가스업 등 | 농업·임업·이업·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| 도매 · 소매업 등 | 기술·여가·입대서비스업 등 | 숙박·음식점업 등 |

## 지원내용

**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(20%-50%)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**

<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>

(단위 : 원)

| 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보수액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| 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| 지원비율 | 50% | | 30% | | 20% | | |
| 월 지원액 | 20,475 | 23,400 | 15,795 | 17,550 | 12,870 | 14,040 | 15,210 |

## 지원절차
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(소상공인 → 근로복지공단) >
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(소상공인 → 소진공) >
③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확인 (소진공(15일 이내)) >
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(소상공인 →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간 내(매월 10일)) >
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(근로복지공단 → 소진공 (30일 내외)) >
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(소진공 → 소상공인 (15일 내외))




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

## 문의처 및 신청방법

http://go.sbiz.or.kr 또는 포털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를 검색하세요

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